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3월 1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328
----------	-----

제출연월일 : 2009년 3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소위원회 설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관련법령 발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2007.12.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2007.12.2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2005.6.30>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1.11.22, 2005.6.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다. <개정 2001.11.22>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로 본다. <신설 2008.7.9>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1997.2.6, 2001.11.22, 2005.6.23>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1997.2.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시·군·구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2008.7.9>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7.9>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8.7.9>

⑧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9>

⑨ 시·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08.7.9>

⑩ 시·군·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군·구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8.7.9>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는 "시·도"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로 본다.

<신설 2008.7.9>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군·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7.9]

제36조 (수당과 여비) 시·군·구 위원회, 시·도 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9>